제 306 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제 안설명자료



2022. 3. .

서울특별시교육청

안녕하십니까?

총무과장 최웅장 입니다.

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·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

○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근거가 되는 「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어 2021년 1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의 비율이 변경되는 내용을 우리교육청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.

□ 관련 법규는

○ "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,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,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 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."고 규정하고 있는 <u>「공공기관의</u>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입니다.

□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

○ 상위 법령의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 중 <u>외부 전문가 비율이</u> <u>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변경됨</u>에 따라 해당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